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

[변경 전후 조문 대비표]

적용대상	변경 전	변경 후
제7조 5항	⑤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44-9114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로 하되, 세부 사항은 "사이트"에 게시합니다.	⑤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66-9114 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로 하되, 세부 사항은 "사이트"에 게시합니다.
제9조 3항	③ "회원"은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44-9114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에게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에 의한 방법으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	③ "회원"은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66-9114 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에게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에 의한 방법으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1항	① "회원"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, "회원"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44-9114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에게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"금융사"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	① "회원"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, "회원"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66-9114 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에게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"금융사"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14조 1항	① "회원"은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44-9114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	① "회원"은 고객센터(담당자: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,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, 전화번호: 1666-9114 , 이메일: cs@smartro.co.kr)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1조 3항	③ "회원"이 다른 "회원"이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 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	③ 양도 는 다른 "회원"이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제22조	[환급 등]	[환급기준]
제22조 1항	① "회원"은 "선불전자지급수단"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회사"는 "선불전자지급수단"에 기록된 잔액에서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 차감한 금액을 "회원"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"회원"이 상품 등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"회사"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"선불전자지급수단"은 본 조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① "회원"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(충전일)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(충전)취소가 가능하며, 구매액(충전액)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22조 2항	<p>② "회사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회원"에게 "선불전자지급수단"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"회사" 또는 "제휴사"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. "선불전자지급수단"의 결함으로 "제휴사"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. "회원"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	<p>② "회원"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"회사"에 요구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<u>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</u>합니다.</p>
제22조 3항	<p>③ "회사"는 "회원"이 현금 용통을 위한 불법·부정한 목적에서 "선불전자지급수단"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액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"회원"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</p>
제22조 4항	<p>④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"사이트"의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</p>	<p>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</u>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. "선불전자지급수단"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. <u>"선불전자지급수단"의 구매금액(충전형의 경우,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)의 100분의 60(1만원이하는 100분의 80) 이상을 사용한 경우</u>
제22조 5항	신설	<p>⑤ 유효기간 경과 후(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,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(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)의 90%를 환급합니다.</p>
제22조 6항	신설	<p>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·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
제23조	신설	제23조 [소멸시효 및 유효기간]

제23조 1항	① "회사"는 "회원"에 대하여 "선불전자지급수단"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"회원"은 "회사"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	① "회사"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<u>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(60개월)</u> 이며, "회원"은 "회사"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"회사"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"회사"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23조 2항	② "회사"는 "사이트"의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마지막 적립, 충전일, 사용일로부터 계산합니다. 단, "회사"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,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.	② <u>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.</u>
제23조 3항	③ "회사"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, "회사"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,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제4항에 따라 소멸하기 전까지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.	③ "회원"은 "회사"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.
제23조 4항	④ "회사"가 유상으로 발행한 "선불전자지급수단"의 경우 제2항의 기산점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, "회원"이 상품 등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"회사"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"선불전자지급수단"은 "사이트"의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.	④ 회사는 <u>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성 전 잔액의 90%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</u> 하여야 합니다.
제23조 5항	신설	⑤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·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, 제공일로부터 5년이며,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.
제25조 1항	① "회사"는 "선불충전금" 전부를 신탁하거나 "회원"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, 신탁업자에게 <u>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.</u> 다만, "회원"의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 말 기준 전체 "선불충전금"의 (1/1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지급준비금"이라고 합니다)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.	① " <u>회사"는 "선불충전금"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,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</u> 지시합니다. 다만, "회원"의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 말 기준 전체 " <u>선불충전금(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)</u> "의 (1/1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지급준비금"이라고 합니다)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.

제25조 4항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, "회사"가 불가피한 사유로 "선불충전금"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(지급준비금 제외)하고자 하는 경우 "회사"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"회원"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, "회사"가 불가피한 사유로 "선불충전금"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(지급준비금 제외)하는 경우 "회사"는 <u>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.</u>
부칙		본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.